

# 홍삼추출 제조시설 인증환경 개선 사업 모집 공고

소공인 제조시설 환경 개선을 통한 식품위해 요소 사전 차단 및 제품 품질 안전성 향상을 위한 「홍삼추출 제조시설 인증환경 개선 사업」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.

2021년 06월 21일

(재)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장 직인생략

## 1. 사업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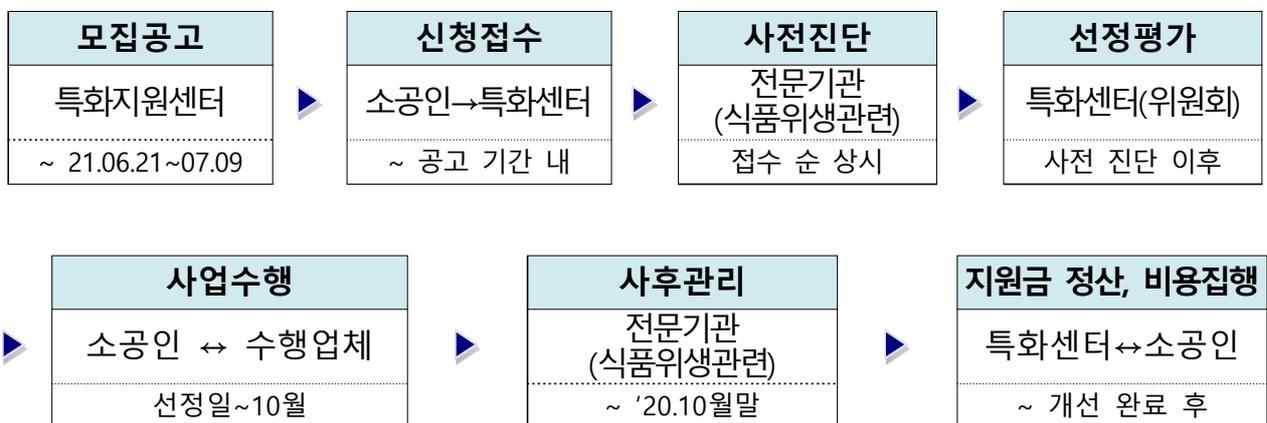
- 사업명 : 홍삼추출 제조시설 인증환경 개선 사업
- 사업기간 : '21. 07월 ~ '21. 10월
- 지원대상 : 금산 관내 식품제조업 소공인(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업체)
- 지원규모 : 12개사 내외(업체당 국비 최대 4백만원 지원)
  - 국비 80%, 자부담 20%

## 2. 지원내용 : 제조시설 위생 설비 지원

※ 상세 지원항목은 <붙임2 - 지원항목> 참조

## 3. 추진절차 및 선정기준

### 추진절차



※ 상기 추진절차 및 일정은 일부 변동 가능

## □ 선정절차

### ○ (서류제출) 필수 및 가점 증빙자료 일체 제출

#### < 제출서류 목록 >

구분	제출서류	부수	비고
필수	① 신청서	1부	<서식 2>
필수	② 추진 계획서	1부	<서식 3>
필수	③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	1부	<서식 4>
필수	④ 사업자(공장)등록증 사본	각 1부	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(업태 : 제조업 必)
필수	⑤ 중소기업(소상공인)확인서 *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* 소상공인 명시, 주업종 : 제조업 必	1부	<p>확인서가 없을 경우, 매출액 확인서류*와 상시근로자 확인서류**로 소공인 여부 확인(모두 충족)</p> <p>* 최근 1년 표준재무제표증명(손익계산서必)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+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</p> <p>** 상시근로자가 있을 경우 :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 후 제출 상시근로자가 없을 경우 :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</p>
필수	⑥ 국세·지방세 완납 증명서	1부	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(국세) 국세청 홈택스, (지방세) 민원24
필수	⑦ 4대사회보험 가입자명부	1부	(발급처)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미가입자)
선택 (가점)	⑧ 가점사항 증빙서류	각 1부	풍수재해보험 가입증명서

\* [별첨 3] 서류 발급처 확인

### ○ (선정평가) 평가위원회\*를 통해 최고·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가 **60점 이상인** 소공인을 우선하여 선정(예산 한도 범위 내)

\* 평가위원 : 위생, 식품제조 등 관련 전문가 3인으로 구성

#### < 평가기준 개요 >

항 목		배 점	비고
지원 타당성		30	심의평가위원회 심의평가 및 선정
지원 품목 선택의 적정성		40	
유사사업 참여 실적		30	
가 점	풍수해 보험 가입자	5	

## 4. 사업수행 및 지원금 정산

- ▶ 정부지원금 지급(소공인 → 금산인삼소공인특화지원센터)을 요청할 때에는 아래의 지출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
- ☑ **세금계산서** : 수행업체(공급업체)의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는 청구용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며, 전자 발행된 세금계산서
- ☑ **거래명세서(비교 견적서 1부)** : 구체적인 위탁 업무내용(수량, 단가 등)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, 공급업체의 직인 날인 필수
- ☑ **공급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** : 통장사본은 공급업체명 또는 공급업체의 대표자명으로 개설된 것이어야 함
- ☑ **완료확인서** : 신청인(소공인)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
- ☑ **이체확인증** : 자부담(부가가치세+정부지원금 초과분)에 대한 은행발급자료로서, 입금 받는 자의 예금주, 은행명, 계좌번호가 확인되는 은행발급 자료  
\*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거래는 인정불가

### <정부지원금 지급 유의사항>

- ☑ 작업환경개선에 소요된 비용 중 소공인 자부담 부분(부가세 포함)은 제외하고 정산서류 검토 후 수행업체(공급업체)에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직접 지급함
- ☑ 1개 업체당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최대 400만원에 한해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며, 실행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소공인이 부담
- ☑ 소공인의 용역 또는 재화 공급업체가 소공인의 직계존비속, 형제, 자매,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 또는 소속기관일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지출은 불인정함
- ☑ **실행비용 전체 금액이 5,500,000원인 경우(예시)**
  - 정부지원금 지급(센터 → 수행업체), 공급업체 이체(금액 : 4,000,000원)
  - 자부담금 및 부가세 지급(소공인 → 수행업체), 계좌이체(금액 : 1,500,000원)
  - \* (자부담) 1,000,000원 (부가세) 500,000원

## 5. 기타 유의사항

- 신청서, 견적서 등 제출서류 상의 허위내용 기재 사실 확인 시, 선정 및 지원결정 취소,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-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, 금산인삼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, 보완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
- 신청인은 수행업체(공급업체) 선정 시, 신청서 및 계획서 내 추진 내용과 업태/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업체로 선정해야하며,
- 수행업체(공급업체)는 4대 보험, 국세·지방세 등 체납이 없고 소공인(신청인)본인과 민법상 친·인척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수행업체로 선정해야함
- 신청인은 지원대상으로 선정 되어 사업 수행 이후 실시하는 정산, 사후관리지도(완료평가)에 적극 협조해야하며,
- 수행 종료 이후 완료보고서와 정산 증빙자료를 10일 이내 금산인삼소공인특화지원센터로 제출해야하고 특화센터는 자료 미비 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

## 6. 접수 및 문의

- 신청기간 : 21.07.01 ~ 21.07.09까지
- 신청방법 : 방문 접수
- 문의처
  - 문 의 : 금산인삼소공인특화지원센터 담당자 매니저 양창규
  - 연락처 : 041)750-1652